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

의안
번호

677

제출년월일 : 2000. 11. 10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제2단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기준등으로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의제공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시민회관 사용허가시 제한규정인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등 자의적 판단규정을 구체화함.
(안제5조)
- 나. 시민회관 사용료 감면규정중 일부감면규정을 전부감면으로 통일하고 자원봉사단체의 행사도 사용료 전부감면대상으로 추가(안제9조)
- 다.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던것을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함.
(안제13조)
- 라.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는 요건 중 “타인이 혐오할 만한 질함이 있는 경우”와 “타인에게 위험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등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제16조)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의 이용목적 및 행사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할 경우
3. 기타 시설물의 관리유지상 주민피해가 우려될 경우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2.파주시 자원봉사단체설치운영조례에의거 활동중인 자원봉사단체가 행하는행사
 - 3.기타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염병 질환자
3. 살상용 무기, 화약류등 타인에게 위협을 줄수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신과소		문화체육과
위안자	문화체육과장	박 재 홍
	문화예술담당	신 동 주
	담 당 자	윤 재 철

북주시민회관사육조제중개조정제(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5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1.공공시설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1.공공시설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1.시설의 이용목적 및 행사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할 경우	1.시설의 이용목적 및 행사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할 경우	1.시설의 이용목적 및 행사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할 경우	1.시설의 이용목적 및 행사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할 경우	1.시설의 이용목적 및 행사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할 경우	1.시설의 이용목적 및 행사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할 경우	1.시설의 이용목적 및 행사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할 경우
2.(생략)	2.(생략)	2.(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기타 시민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3.기타 시민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3.기타 시설물의 관리유지상 주민피해가 우려될 경우	3.기타 시설물의 관리유지상 주민피해가 우려될 경우	3.기타 시설물의 관리유지상 주민피해가 우려될 경우	3.기타 시설물의 관리유지상 주민피해가 우려될 경우	3.기타 시설물의 관리유지상 주민피해가 우려될 경우	3.기타 시설물의 관리유지상 주민피해가 우려될 경우	3.기타 시설물의 관리유지상 주민피해가 우려될 경우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생략)	1.(생략)	1.(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파주시자원봉사단체설치운영조례에 의거 활동중인 자원봉사단체가 행하는 행사	2.파주시자원봉사단체설치운영조례에 의거 활동중인 자원봉사단체가 행하는 행사	2.파주시자원봉사단체설치운영조례에 의거 활동중인 자원봉사단체가 행하는 행사	2.파주시자원봉사단체설치운영조례에 의거 활동중인 자원봉사단체가 행하는 행사	2.파주시자원봉사단체설치운영조례에 의거 활동중인 자원봉사단체가 행하는 행사	2.파주시자원봉사단체설치운영조례에 의거 활동중인 자원봉사단체가 행하는 행사	2.파주시자원봉사단체설치운영조례에 의거 활동중인 자원봉사단체가 행하는 행사
(신설)	(신설)	3.기타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기타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기타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기타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기타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기타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기타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현	개	정	사	유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 ----- -----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개	○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서규정 신설
16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질환이 있는 자 2. (생략)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생략)	제16조(입장의 제한) ----- ----- ----- 1. 전염병질환자 2. (현행과 같음) 3. 살상용 무기, 화학류 등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현행과 같음)	안	개	○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는 요건중 “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는 경우”와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등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